

제134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일시·장소: '25. 9. 22.(월) 14:00 ~ 15:15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□ 참 석 자

└ 김준기·변옥숙·박용철 위원 온라인 참석

○ 해양경찰위원회 : 길태기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

○ 해양경찰청 : 차장(代), 안건 소관 국·과장, 위원회담당관 등 7명

□ 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7건(수정의결 4, 원안의결 3)

[심의·의결 7건]

연번	형식	안 건 명	내 용	심의 결과	부서
1	훈령	「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」 폐지안	- 상위법(경직법)과 중복된 심의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규칙을 폐지하고, 관련 업무는 상위법으로 일원화 - 손실보상 판례사례 등을 담은 「손실보상 실무 매뉴얼」 제작 예정(25.11월)	원안 의결	혁신 행정
2	대령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	- 시험집행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- 인사처 권고에 따라 종합적성검사를 단계별 시험 조항에서 제외하고, 면접시험에 포함되는 절차로 조정 수정사항 채용단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성검사 시행 시기(서류전형 전 단계에서 실시)를 명시	수정 의결	교육 훈련
3	부령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- 면접 평가요소 세분화* 및 합격자 결정기준 정비** * (기존) 2개 요소 → (개정) 해양경찰 인재상에 맞춘 5개 요소 ** 과반수 위원이 동일 평가요소 2점 이하 채점 시 불합격 - 인사처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배점 항목에서 가산점 제외 - 동점자의 합격자 우선순위 결정 법령* 추가 * 「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(25.6.4. 시행)	원안 의결	
4	예규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」 일부개정안	- 면접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경우, 각 단계별 면접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개선 - 신체검사서 기준일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맞게 정비* * (기존)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 → (개정) 판정일로부터 4개월 수정사항 「판정일」에 대한 해석상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보완적 표현 추가(판정일⇒검진기관의 판정일)	수정 의결	

연번	형식	안 건 명	내 용	심의 결과	부서
5	예규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승진시험 응시자 입·퇴장 규정 현행화 - 시험시간 중 시간 중 퇴장 시 재입장 불가(화장실 예외) • 선택형 필기시험 채점방식의 전산자동처리 원칙 명확화	원안 의결	
6	예규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	• 내부 공문으로 시행하던 '상시학습 운영' 세부사항을 효율적 운영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규칙으로 제정 ※ (주요내용) △ 상시학습 기준 정립 △ 연간 계획 대상 명시 △ 직장교육 방법 구체화 △ 부서육성 평가 명확화 등 수정사항 부서육성평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합리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찰관만 평가대상이 되도록 수정	수정 의결	교육 훈련
7	훈령	「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보호지침」 제정안	•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체계와 책임 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제정 ※ (주요내용) △ 정보보호책임관 및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범위 △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사항 등 수정사항 정보보호책임관 지정 관련 일부 조문을 통합하고, 불필요한 중복표현을 제거하여 조문 체계 정비	수정 의결	정보 통신